

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96
----------	------

2024년 9월 11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나. 제출일 : 2024년 8월 12일
다. 회부일 : 2024년 8월 14일
라. 상정일 :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2024년 9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구종원 평생교육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의 위탁기간이 2024.12.31. 만료 예정에 따라,
-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 운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

-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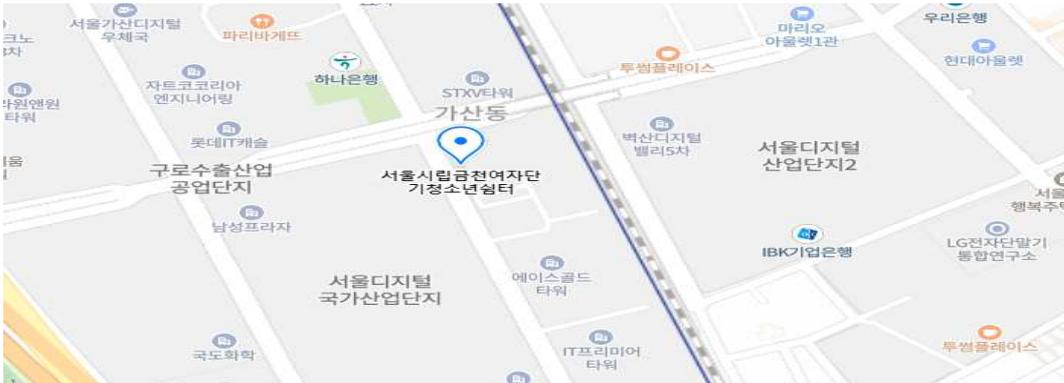
-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위탁 사무 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-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20, G밸리창업복지센터 내
- 시설규모 : (대지) 1,149 m^2 , (연면적) 6,017.63 m^2
- 주요시설 : 상담실, 교육실, 숙소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○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1.1 ~ 2027.12.31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,095백만원('24년)
- 산출근거 : 인건비 543백만원, 운영비 101백만원, 사업비 451백만원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(2025.1.~2027.12.)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임.

〈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- 위탁사무명 : 서울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
- 소재지 :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, G밸리창업복지센터 내
- 시설규모 : 연면적 701.44㎡
- 주요시설 : 상담실, 생활실, 학습실, 사무실 등
- 이용대상 : 가정 밖 여자청소년
- 위탁사무 내용
 -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
 -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
 - 청소년 문제예방사업
 -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
 - 쉼터의 시설물, 장비 등 유지관리
 -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
 -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
 - 기타 '시'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5.1.1. ~ 2027.12.31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1,095백만원('24년)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금천청소년단기쉼터는 여성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곳이며, 정원은 20명으로 단기보호(숙식 및 사회안전서비스 제공), 의료 서비스(건강검진 및 질병 치료) 제공, 직업체험프로그램, 흥미진진 체험활동(스포츠 및 체험활동) 등 5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
- 위탁 사무는 쉼터의 관리·운영 및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이고, 대부분 청소년의 상담, 긴급지원, 보호 등 비권력적 사무이며,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보호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바, 민간위탁의 대상 및 민간위탁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.
- 다만, 지도·점검 결과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, 현금지출에 대한 개선 권고, 출장복명서 미결재, 비품 수불대장 부재, 시설장비유지비로 자산취득 등 지적되었는 바, 한 수탁 법인(한국청소년연맹)이 쉼터 개소 이후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독점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〈 최근 3년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 지도·점검 지적사항 〉

-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
- 현금지출에 대한 개선 권고
- 출장복명서 미결재
- 비품(노트북, 카메라 등) 수불대장 부재
- G20(회계관리시스템)에 자산관리대장 미등록
- 시설장비유지비로 자산취득

〈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 민간위탁 수탁현황 〉

- 1998. 3. 1. ~ 2001. 2. 28. : 신 규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- 2001. 3. 1. ~ 2004. 2. 29. : 재계약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- 2004. 3. 1. ~ 2007. 2. 28. : 재계약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- 2007. 3. 1. ~ 2010. 2. 28. : 재위탁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- 2010. 3. 1. ~ 2012. 12. 31. : 재위탁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- 2013. 1. 1. ~ 2014. 12. 31. : 재계약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- 2015. 1. 1. ~ 2017. 12. 31. : 재위탁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- 2018. 1. 1. ~ 2019. 12. 31. : 재계약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- 2020. 1. 1. ~ 2022. 12. 31. : 재위탁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- 2023. 1. 1. ~ 2024. 12. 31. : 재계약 / (사)한국청소년연맹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시립금천청소년상담센터(여)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9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금천청소년상담센터(여)의 위탁기간이 2024.12.31. 만료 예정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금천청소년상담센터(여)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 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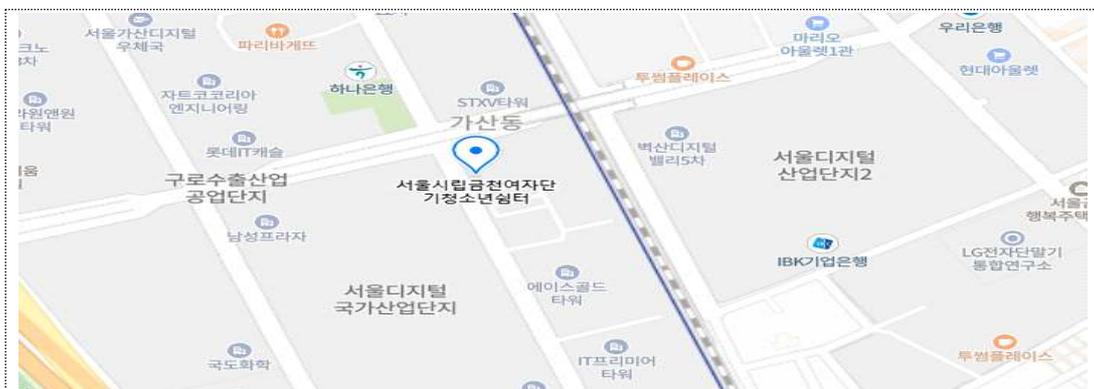
-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(여)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및 청소년복지지원 활동 등
-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외홍보사업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20, G밸리창업복지센터 내
- 시설규모 : (대지) 1,149㎡, (연면적) 6,017.63㎡
- 주요시설 : 상담실, 교육실, 숙소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5. 1. 1. ~ 2027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1,095백만원('24년)

- 인건비 543백만원, 운영비 101백만원, 사업비 451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미연 (☎ 2133-4131)